

백영화 선임연구위원

### 요 약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직접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손해사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협회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다루고 있음

#### ○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총 10건의 보험업법 개정안<sup>1)</sup>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이 마련되었고(2023. 11. 30), 이후 법제사법위원회(2024. 1. 8)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2024. 1. 9)
-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손해사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음
  - 이하에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함

#### ○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손해사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함

-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②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③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보험회사의 준수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이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있어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 시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금지됨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음

1) 전재수 의원안(제2106884호), 전재수 의원안(제2108659호), 박용진 의원안(제2100595호), 윤상현 의원안(제2118217호), 오기형 의원안(제2119211호), 박재호 의원안(제2118909호), 최승재 의원안(제2119848호), 이용우 의원안(제2121377호), 양정숙 의원안(제2121626호), 이장섭 의원안(제2121412호)

〈표 1〉 유형별 준수사항

구분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 충족 시 이에 동의해야 함</li> </ul>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직접 수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li> <li>•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li> <li>• 손해사정서 작성 시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줄 것</li> <li>•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li> </ul>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 시	<p>준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li> <li>•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li> <li>•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li> </ul>
	<p>금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li> <li>•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li> <li>•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li> <li>•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li> <li>•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li> <li>•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li> <li>•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li> </ul>

- 개정안은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음
  -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고, 개인인 손해사정업자(보조인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
  -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함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는 과대·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됨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금지행위에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추가되고, 금지행위 관련 조항에서 손해사정사의 범위에 손해사정 보조인이 포함됨

-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항도 정비함
  -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밖에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의무나 금지사항 위반, 보험회사의 금지사항 위반 등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

〈표 2〉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의 내용

손해사정 관련 의무 또는 금지사항	제재의 내용	
	현행	개정안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189③, i)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189③, ii)	제재 없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행위	제재 없음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손해사정서 교부 및 중요 내용 안내 의무 위반 행위(§189①, ②)	제재 없음	과태료(1천만 원 이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189③, iii)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189③, iv)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 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189③, v)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189③, vi)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89③, vii)		
손해사정 관련 표시·광고 위반 행위	신설 규제	과태료(1천만 원 이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금지사항 위반 행위	신설 규제	과태료(1천만 원 이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행위	신설 규제	과태료(5백만 원 이하)

○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협회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다루고 있음

-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추가함
- 또한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제·개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